

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

존경하는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  
노원구 제5선거구 윤기섭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드려야 하나 서면으로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

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지난 10월 16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.

2023년 8월 16일 일부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 시행예정인 「교통안전법」의 개정으로 단지내도로의 범위에 「고등교육

법」에 따른 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를 포함하도록 하고,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고령자, 어린이 등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.

이에 따라 단지내도로 범위에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를 포함하면서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따라서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 하였습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